더샵 번영센트로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더샵 번영센트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모델하우스 (http://www.더샵번영센트로.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견본주택 방문 및 관람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해 방문 및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한정된 일정 인원 방문관람 운영
 :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 '더샵(https://www.thesharp.co.kr/)' 검색 후 '더샵 번영센트로 홈페이지' 방문 후 '방문예약' 클릭 후 접수 및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thesharp.co.kr/)및 대표전화 (052-260-4411) 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당 모델하우스 입구 설치 열화상카메라 기준)
* 소독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번영로 더샵은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2-260-441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10.(월)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주택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6개월 전매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당첨자발표일(2020.08.28.)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0.)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신설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반영, 3월 16일 공고분부터 적용)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더샵번영센트로.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 을 받을 수 있음.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8월 20일(목)	8월 21일(금)	8월 24일(월)	8월 28일(금)	9월 8일(화) ~ 9월 10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44891호 (2020.8.10.)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 남구 야음동 487-8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7개동, 총 632세대 중 일반분양 311세대(조합원 321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22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0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06	1	59.9811A	59A	59.9811	21.2544	81.2355	36.7029	117.9384	32.7936	87	8	8	17	2	35	52	5
	2020000806	2	59.9991B	59B	59.9991	21.4896	81.4887	36.7139	118.2026	32.8034	27	2	2	5	-	9	18	2
	2020000806	3	75.9854A	75A	75.9854	26.1518	102.1372	46.4961	148.6333	41.5437	28	2	2	5	-	9	19	3
	2020000806	4	75.8858B	75B	75.8858	26.3610	102.2468	46.4351	148.6819	41.4892	64	6	6	12	1	25	39	5
	2020000806	5	84.8775	84	84.8775	28.8346	113.7121	51.9373	165.6494	46.4053	105	10	10	21	3	44	61	8
	합 계										311	28	28	60	6	122	189	23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더샵번영센트로.com) 사이버모델하우스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0.10.20	2021.02.22	2021.05.20	2022.04.20	2022.07.20	2022.10.20	
59.9811A	59A	87	101동 1,3,4라인	2층	5	157,259,000	259,541,000	416,80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125,040,000
				3층	6	157,259,000	264,041,000	421,30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126,390,000

			102동 1,2,4라인	4층	6	157,259,000	270,941,000	428,20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128,460,000
				5~10층	18	157,259,000	277,741,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1~19층	26	157,259,000	286,841,000	444,10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133,230,000
				20층 이상	26	157,259,000	293,741,000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59.9991B	59B	27	101동 2라인 102동 3라인	2층	2	157,306,000	259,494,000	416,80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41,680,000	125,040,000
				3층	2	157,306,000	263,994,000	421,30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42,130,000	126,390,000
				4층	2	157,306,000	270,894,000	428,20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42,820,000	128,460,000
				5~10층	3	157,306,000	277,694,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11~19층	11	157,306,000	286,794,000	444,10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44,410,000	133,230,000
				20층 이상	7	157,306,000	293,694,000	451,0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75.9854A	75A	28	103,104동 1,3라인 107동 1라인	2층	3	199,220,000	309,080,000	508,30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152,490,000
				3층	5	199,220,000	314,580,000	513,80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154,140,000
				4층	5	199,220,000	322,980,000	522,20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156,660,000
				5~10층	11	199,220,000	331,280,000	530,50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159,150,000
				11~15층	4	199,220,000	342,380,000	541,60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162,480,000
75.8858B	75B	64	103,104 107동 2라인 105,106동 3라인	2층	5	198,959,000	309,341,000	508,30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50,830,000	152,490,000
				3층	5	198,959,000	314,841,000	513,80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154,140,000
				4층	5	198,959,000	323,241,000	522,20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156,660,000
				5~10층	26	198,959,000	331,541,000	530,50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53,050,000	159,150,000
				11~19층	18	198,959,000	342,641,000	541,60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162,480,000
				20층 이상	5	198,959,000	350,941,000	549,90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164,970,000
84.8775	84	105	105,106동 1,2,4라인 107동 3,4라인	2층	8	222,533,000	351,867,000	574,40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57,440,000	172,320,000
				3층	8	222,533,000	357,967,000	580,50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58,050,000	174,150,000
				4층	8	222,533,000	367,167,000	589,70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58,970,000	176,910,000
				5~10층	28	222,533,000	376,267,000	598,80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59,880,000	179,640,000
				11~19층	31	222,533,000	388,567,000	611,10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183,330,000
				20층 이상	22	222,533,000	397,667,000	620,20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62,020,000	186,06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811A	59.9991B	75.9854A	75.8858B	84.8775
약식표기	59A	59B	75A	75B	84

■ 공통 유의사항

■ 공통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함.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견본주택은 59A, 84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59B, 75A, 75B)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사업승인 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계약금(공급금액의 10%)은 견본주택 방문 계약 체결 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계좌는 하단 Ⅶ. 계약 체결의 납부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59A	59B	75A	75B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	2	2	7
	10년 이상 복무군인		2	-	1	1	3	7
	중소기업 근로자		2	-	1	1	3	7
	장애인		2	1	-	2	2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8	2	2	6	10	2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3	4	4	9	16	46
		일반공급(25%)	4	1	1	3	5	1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	1	3	6
합 계			35	9	9	25	44	1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구분 •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①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울산지방보훈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공급 세대수 : 전용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 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공급세대수 : 총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순으로 공급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2018.12.11.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자격 요건 : 신청 주택형의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공급세대수 : 전용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1순위 요건 충족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공급세대수 : 총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을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당첨 동호수 결정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사항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 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만 65세 이상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 한 경우만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참조) ■ 방문접수(견본주택) 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 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도 공급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울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1순위	전 주택형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table>
<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d rowspan="9">■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7">※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Ⅳ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20(목)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08.21(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8.24.(월)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Ⅴ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일정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8.28.(금)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9.01.(화)~2020.09.06.(일) (10:00~16:00) / 예비입주자 일정 개별통지 • 장소 - 더샵 번영센트로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더샵번영센트로.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28(금) ~ 2020.09.06(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2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함. 정보취약계층은 견본주택 내 특별공급청약 접수시 제출완료 하여야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홈) 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본인	당사 견본주택 배치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혼자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변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확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임.)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 기준표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작성(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해외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주민등록표초본	자녀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세무서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 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견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Ⅵ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포함)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해당 특별공급 관련 서류 지참(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포함하며, 방문신청을 한 자는 제외)
일반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전입일 및 거주기간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자녀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전입일 및 거주기간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O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 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 로 발급]
				자녀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O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위임장		
	O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2020.09.08.(화) ~ 2020.09.10.(목) 10:00 ~ 16:00까지(3일간)
계약장소	더샵 번영센트로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번지

※ 상기 일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해당 일 및 해당시간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또는 집단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건립된 견본주택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 입국자 또는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 분양사무실에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일정 등을 조정하여야합니다. 별도 연락이 없거나 현장 내 발열로 인한 출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 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8.28.)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가능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본 인	• 계약금 입금증(분양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금) ※ 현금수납 불가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재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름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107-7491-05	코리아신탁(주)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홍길동 / 107동 1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713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 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되(단, 사업 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월 이자납입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거 사용검사 전에 계약자가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를 실행하며 그 일자는 추후 통보함.

Ⅷ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 타입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공고상 타입)	59A	59B	75A	75B	84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	12,000,000	12,000,000	13,000,000	13,000,000	14,0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상 명시 예정임.

-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방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12,000,000	1,200,000	10,800,000
59B	12,000,000	1,200,000	10,800,000
75A	13,000,000	1,300,000	11,700,000
75B	13,000,000	1,300,000	11,700,000
84	14,000,000	1,400,000	12,6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금액은 분양주택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잔금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해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 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상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 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벽체 돌출, 천장 마감 및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고 내부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일부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발코니의 손세탁볼, 수납가구 등의 가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107-7469-00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 홍길동)
※ 상기 계좌의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일은 별도 안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제시한 추가품목으로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용세대		세부 사항	계약금(10%)	잔금(90%)	판매가
				계약시	입주지정일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LG)	59A, 59B	선택1	거실+안방(2개소)	371,000	3,339,000	3,710,000
		선택2	거실+안방+침실1+침실2(4개소)	601,000	5,409,000	6,010,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3개소/룸인룸 선택시)	513,000	4,617,000	5,130,000
	75A,75B	선택1	거실+주방+안방(3개소)	481,000	4,329,000	4,810,000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5개소)	733,000	6,597,000	7,330,000
	84	선택1	거실+주방+안방(3개소)	494,000	4,446,000	4,940,000
		선택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5개소)	748,000	6,732,000	7,480,000

2.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용세대	내용		세부사항	계약금(10%)	잔금(90%)	판매가
					계약시	입주지정일	
키친빌트인 수납/가전 1	59B,75A, 75B,84	LG	BI 김치냉장고 + BI 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장	[LG] BI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BI냉장고 (S711SI24B) + 전기오븐(MZ385EBT) + 상/하부장	893,000	8,037,000	8,930,000
		삼성		[삼성] BI김치냉장고(RQ22K5L(R)01EC) + BI냉장고 (BRS665040SR)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854,000	7,686,000	8,54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 2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김치 3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Cotta / 변온 : RZ24T5660AP Satin 김치 : RQ32R7645AP Cotta	507,000	4,563,000	5,070,000
키친빌트인 수납/가전 3		LG	BI 김치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장	[LG] BI김치냉장고(K221PR14BL1/R1) + 전기오븐 ((MZ385EBT)) + 상/하부장	223,000	2,007,000	2,230,000

		삼성		[삼성] BI김치냉장고(RQ22K5L(R)01EC)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210,000	1,890,000	2,100,000
키친빌트인 가전 1	59A	LG	BI 냉장고 + 전기오븐 + 수납장	[LG] BI냉장고(S711SI24B) + 전기오븐((MZ385EBT)) + 상/하부장	716,000	6,444,000	7,160,000
		삼성		[삼성] BI냉장고(BRS665040SR)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683,000	6,147,000	6,830,000
키친빌트인 가전 2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 전기오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냉장+변온 2도어형) + 전기오븐(HSB-N361B) + 상/하부장 * 냉장 : RR39T7695AP Cotta / 변온 : RZ24T5660AP Satin	348,000	3,132,000	3,480,000
청정환기시스템	전타입	경동	청정환기시스템		110,000	990,000	1,100,000

3.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위치	품목	적용타입	내용	계약금(10%)	잔금(90%)	판매가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중문	전타입	1 슬라이딩 도어	106,000	954,000	1,060,000
안방	안방 붙박이장	84	안방 붙박이장(슬라이딩장)	321,000	2,889,000	3,210,000
침실1 및 2	룸인룸-에듀	59A	복도 팬트리 및 스터디룸(2슬라이딩 도어+책상형 붙박이장)조성	365,000	3,285,000	3,650,000
침실1 및 2	룸인룸-베이직	59A	복도 팬트리 및 스터디룸(2슬라이딩 도어) 조성 (책상형 붙박이장 미제공)	242,000	2,178,000	2,420,000
침실1 및 2	룸인룸-에듀	59B	복도 팬트리 및 스터디룸(2슬라이딩 도어+책상형 붙박이장) 조성	367,000	3,303,000	3,670,000
침실1 및 2	룸인룸-베이직	59B	복도 팬트리 및 스터디룸(2슬라이딩 도어) 조성 (책상형 붙박이장 미제공)	243,000	2,187,000	2,430,000
침실1 또는 침실2	자녀방 붙박이장	75A : 침실2 75B, 84 : 침실1	서랍형 붙박이장	76,000	684,000	760,000
주방	본(本) 다이닝	84	대형 팬트리 및 홈바형 가전소물장	191,000	1,719,000	1,910,000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가구형태(시스템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친빌트인가전 혹은 키친빌트인 수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치냉장고 및 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59A 타입은 주방 내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선택시 벽체와 중문 사이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자 본인에게 계약 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은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일정은 계약자 본인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장 세대의 경우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조합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공동주택 공급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일정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발주 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사착수일로부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조합과 계약자간의 계약으로 시공사에는 일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금액 관련 민원 등)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제 시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됩니다.
- 가전제품 옵션은 세대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한 별도 납부계좌가 공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2개소에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안방, 거실 냉매배관만 기본제공). 냉매배관 설치 위치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세대의 냉매배관은 전타입 2개소(안방, 거실)에 매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청정환기 시스템 옵션 미 선택시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됨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107-7479-06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301 홍길동)
※ 상기 계좌의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스타일 초이스(무상옵션)

적용타입	품목	기본형	선택형	비고
59A,59B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형 드레스룸	올인원 드레스룸 (견본주택 설치)	분양가 포함 (발코니 확장시)
59A,59B	자녀방 붙박이장	서랍형 (견본주택 설치)	파우더형	
75A,75B,84	자녀방 붙박이장	파우더형 (견본주택 설치)	서랍형	

- 홈스타일 초이스 선택사항은 발코니 확장시 제공됩니다.
- 홈스타일 초이스를 미선택한 경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파우더형 드레스룸 또는 올인원 드레스룸)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수납공간, 제공 품목 차이, 등기구 디자인 및 위치, 콘센트 등 배선기구 수량 및 위치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분양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방, 붙박이장 설치 위치/길이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각 타입별 분양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로 가구설치 위치가 상이하여 가구도어 열림 방향, 측면장 위치 등이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드레스룸 홈스타일초이스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 내부 가구 구성이 변경되며, 59A 견본주택 드레스룸(올인원형) 내 설치된 월판넬과 전신경은 "올인원형" 선택시에만 제공되는 품목으로, "파우더형" 선택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시공된 제품은 품절, 품귀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품목 및 범위

① 공통사항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집적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 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 선택(개별선택 불가)	바닥	마루, 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천연강화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발코니/다용도실/실외기실/대피공간 타일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우수 선홈통, 수공간 바닥 방수(보호몰탈시공)
	벽	벽지 및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벽지, 발코니/다용도실/대피공간/실외기실 도장)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및 단열재
	천장	천장지, 욕실천장재, 우물천장, 발코니/대피공간/실외기실 도장, 다용도실 천정마감, 몰딩	거실, 침실, 현관 천정틀 위 석고보드(커튼박스 포함)
	창호	각실 문틀, 문짝, 문선 및 도어락(하드웨어 일체), 내부 PVC창호(하드웨어 일체), 철창호, 디지털도어락	외부창호, 현관문, 소방관련 방화문(대피공간 도어)
	주방	주방가구 및 다용도실 가구(상판 및 악세서리 일체 포함), 가전류(쿡탑, 후드, 주방TV), 주방수전, 주방벽마감(엔지니어드스톤)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단부보호처리 등), 주방배기 덕트
	욕실	타일, 엔지니어드스톤(세면대 뒷턱), 욕실장, 샤워부스, 재료분리대,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악세서리류, 비데, 욕조하부틀, 코킹, 배기팬	설비배관(바닥, 벽), 바닥미장, 설비배관(급배수),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	가구류 일체(신발장,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상판포함),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거울, 수전류(발코니 등), 전동형 빨래건조대	설비배관(에어컨 냉매배관), 거실 월패드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직부등, 매입등, 센서등 일체)	배선/배관(스위치 및 콘센트 등)

※ 상기 품목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주택형별 기본제공 품목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③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59A	59B	75A	75B	84
기본옵션	18,706,000	18,706,000	21,123,000	21,123,000	23,540,000

(마이너스옵션 금액)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는 비확장으로 시공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검사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IX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1. 입주예정일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할 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입주지정 개시일 1~2개월 이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배 공사, 도장 공사, 가구 공사, 유리 공사, 타일 공사, 주방가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3.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관리비를 부과합니다.

X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동측에 위치한 소공원은 공동주택과 별도로 공사가 진행되며, 소공원의 선형, 패턴, 재질 등은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옥외보안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어 계약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103동의 저층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117동)이 전면에 인접하여 조망 간섭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05동 1, 2호라인(남동향)은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계획에 따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시설물 위치, 거리표시와 모형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의 연결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지와 연결되는 보도 등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타일, 마루, 도배 등)이 없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간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문주의 형태,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전유부분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화설계로 계획된 문주, 캐노피, 드라이 에이리어, 쓰레기 분리수거장, 부대시설, 공용부 등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랍니다.
- 101동 및 102동의 경우 보육시설이 인접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와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사무소 실외기 설치로 인한 시선 간섭 및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5동의 경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 실외기 설치로 인한 시선 간섭 및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입주 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 미생물 살생,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추가선택 품목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공개공지 등), 아파트의 배치구조(어린이집,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내진등급 1등급으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에 해당하고 최대지반가속도는 0.240g 입니다.

- 에너지관련 적용법규 시점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2016.11.02),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7.06.20), 결로방지설계기준(2016.12.07)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녹색건축인증기준(2014.12.05.)기준으로 설계됩니다.
- **아파트 준공 후「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부지내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59A, 84)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59B, 75A, 75B)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문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형태, 규격, 마감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타일(욕실, 발코니, 거실아트월 등)의 나누기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욕조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 전달로 인한 뒤틀림 ,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천장고(2.3m)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6B 타입과 75B 타입은 다용도실에 전열교환기 설치 후 천장이 마감되므로 타 세대 대비 천장고가 낮아집니다.
- 세대별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바닥 마감레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줄어듦으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홈스타일초이스(무상옵션)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의 천장에는 각종 배수용 배관이나 전원 공급용 전선 및 콘센트, 전열교환기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안방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홈통, 각종 배관, 가스관 등은 시공 여건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커튼박스 길이는 천장 내부 배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59B 타입은 59A 타입과 세대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므로 모형 및 도면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인 75A 및 75B 타입은 84 타입과 세대마감이 동일하며, 평면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므로 모형 및 도면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발코니의 손세탁볼 및 하부수납장은 75A, 75B, 84 타입에 설치됩니다(발코니 확장시).
- 주방 싱크볼의 크기는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의 크기는 전용면적 타입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A 타입은 주방 내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며, 김치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키친빌트인가전, 키친빌트인 수납/가전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장 뒤쪽 벽체는 벽지 마감됩니다.
- 안방 유상옵션 붙박이장은 84 타입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 인허가조건, 풍압테스트 및 기타 시공여건에 따라 창호 프레임 규격 및 색상, 유리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금속문의 문짝, 프레임, 손잡이, 힌지 등의 형태, 색상,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문 개폐성능 확보를 위해 날개벽 설치 및 개폐 방향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동체 감지기는 1,2층(필로티층 포함) 세대 및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
- 주방 TV는 상부장 하부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주방 TV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TV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고, 주방 TV폰 배선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월패드 및 주방 TV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 기구 및 기타 기구의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 (1Φ * 220V *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분전반은 침실 출입문 후면에 통신 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 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 될 경우 발코니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등의 사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제출 예정이며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보관될 예정입니다.

▣ 계약

- 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도산초등학교이며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 중학교의 경우 옥동/야음학교군, 삼산학교군[동평중, 신일중, 신정중, 야음중, 옥동중, 월평중, 중앙중, 학성중, 강남중, 대현중, 태화중, 서여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고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군(구)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사업부지의 대지경계는 사업부지 전체의 고저차로 인하여 사업부지 외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경관녹지, 완충녹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등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의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실시계획단계로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주민공동시설은 작은도서관, 열람실, 다목적실로 구성되고,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실내다목적운동시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문주,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사인, 색채디자인] 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주)포스코건설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출입구 주변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중앙광장 및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은 일부 동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 시 불편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공사범위가가 아니며 지자체 심의 및 인허가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계획,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모형, CG, 등에 표현된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의 관련 민원을 당사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의 전면 및 측면에는 상가가 계획되어 있고 상가 이용객의 시선간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106동은 차량 진출입로와 인접하여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과 차량 전조등에 따른 눈부심 현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또는 조경계획 등에 따라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 될 수 있으며 , 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 주변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인근에는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근접 세대의 경우 시선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 바, 이용 상의 불편 및 인접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잔디블럭 마감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배치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동간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세대에는 시선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01동, 103동, 105동, 107동의 경우 전면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 쓰레기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형태,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01동 주변의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에는 제연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소방시설 점검시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 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문주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 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에는 유사시 사용되는 안전매트 이용을 위해 수목의 식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마감재 및 집기, 창호 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공용설비(제습장치, 냉난방기, 엘리베이터 등).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조경(식재, 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울타리)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TV 공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비상 발전기 드라이 에이리어 주변은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및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택배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더샵 지키미 시스템은 모델하우스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는 모델하우스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 등 및 지하, 지상층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및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공청 안테나 및 위성 수신 안테나는 전파 수신이 양호한 동(102동) 지붕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사업자 중계기 (지하층 및 106동 지붕)가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3동의 저층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117동)이 전면에 인접하고 조망에 간섭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02동과 106동 사이, 103동과 105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지붕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바닥마감은 물 구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 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101동 우측, 107동 좌측에 수공간을 포함하여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 (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 공간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 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상 1층과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 필로티 내부벽체 또는 외부벽체에 유사시 사용되는 제연휀룸 D.A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경관,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 설치 된 1층 주출입구의 경우 구조체로 인하여 개방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치된 설계 도서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 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 및 일부 창호는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크기, 개폐방향 및 색상, 설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세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등은 본 시공시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주방,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확장된 발코니에는 별도의 급·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세탁실, 다용도실에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바닥의 단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다용도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규격, 개소 및 크기는 변경 될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급수급탕분배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설치되어 천정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형 빨래건조대 사용시 발코니 사이즈 및 형태에 따라 일부 벽체와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등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 및 크기, 높이, 색상은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탑지붕,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디자인 계획에 따라 기본 석재마감으로, 석재뿜칠, 도장 등 및 석재가 혼용 적용될 수 있습니다.(필로티 포함)
- 각동 입면 및 저층부 디자인은 현장여건, 구조, 미관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색채, 사인 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됩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홀 대기인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유치원, 학원 등의 학생 수송을 위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지하 토목공사와 지정공사는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구조, 데크플레이트 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의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부지의 순차 개발 계획에 따른 공사상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악취 및 해충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을 통해 세부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급 여건에 따라 101동 인근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드라이 에이리어, 탑라이트)이 아파트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선간섭,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탑라이트는 지하주차장의 채광을 위한 시설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절대 상부에 올라가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마감수준은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이며, 로비층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임. 또한, 기준층의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도장마감 기준이며,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계단실 내부의 바닥마감은 지정타일, 벽마감은 지정 도장으로 시공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홈스타일 초이스(가구형태 선택, 평면선택 등)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시 무상옵션 사항은 홈스타일 초이스(가구형대 선택, 평면선택 등)가 있으며, 별도의 분양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본인 누락 또는 선택에 과실은 귀하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 및 환기 관련 덕트 등이 시공되는 PD, AD 등 샤프트 내부에는 일체 마감 (미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 천장 내부 및 마루 바닥 하부에는 벽체 마감 (타일, 도배지, 아트월) 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확장형 선택 시와 기본제공품목 및 공간별 선택사항이 상이하거나 제한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의 욕실/주방 등의 설비배관 계획에 따라 피로티 일부 구간의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후드 상부장 내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됨에 따라 상부장의 일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냉매배관은 전타입 2개소(안방, 거실)에 매립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 2호라인(남동향)은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계획에 따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직접 진입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단지내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 규모로 시공되나, 동별 주차장 사용층이 다르므로 비치된 설계 도서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는 2.3m입니다. 각 주차장의 최저 차로 높이 및 유효 층고 높이에 따라 탑차 등의 출입 및 이동의 제한 될수 있으며, 이는 건립된 견본주택 단지 모형 및 현장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의 유효천장고는 2.3m로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주차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상가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근에 문주가 설치 될 예정으로 주출입구 인근의 102동 및 부출입구 인근의 106동의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조망 또는 일조의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문주의 세부형태 및 높이, 마감재 등은 본 공사 시 조정 될 수 있으며, 단지 외관 특화 등을 위해 발주처 협의 하에 설치개소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5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그에 대한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 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지정 및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주, 경비실, 주동입면, 저층부 측벽, 동출입구, 옥상부, 램프상부구조, 쓰레기집하장, 외부 계단실 및 외부 엘리베이터, 탑라이트, 지상환기구(D.A.), 자전거보관소 등을 포함한 단지 외관의 디자인은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아니하며 실 시공시 시공성, 안전성, 기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사항

- 견본 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연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 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5.0.0, iOS 11.0버전 이상이 필요합니다.
- 모델하우스에 전시, 시연용 AI 스피커 및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미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스마트폰의 OS 사양은 Android 7.0, iOS 10.3 이상이며,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더샵 클라우드 플랫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 카카오 플랫폼과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 가입을 권장 합니다. 또한 더샵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 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 제공사 운영 정책에 따라 상이 함) 는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서비스 제공사 운영 정책에 따라 상이 함) 무상 서비스로 제공 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설이 있으며, 유상 전환 시 서비스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더샵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 한 생활 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 (서비스 제공사를 통한 상세 확인 가능)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개발 여건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서비스 제공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사에 따라 서비스 제조사 앱을 통한 제품 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 합니다.

Ⅺ 기타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은 작은도서관, 열람실, 다목적실로 구성되고,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실내다목적운동시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샤워실 등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113,536,220,000	제 01282020-101-00082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제7조 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간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및 정보통신
상 호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진전기엔지니어링	㈜한국나이스기술단
금 액	1,833,683,000	424,050,019	43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상 호	번영로더샵 지역주택조합	(주)포스코건설
법인등록번호	503-82-74652	174611-0002979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88(달동) 3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더샵번영센트로.com

■ 주택홍보관 및 문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번지 더샵 번영로센트로 견본주택

■ 분양문의 : 052-260-4411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

시행사 : 번영로더샵 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 ㈜포스코건설